

< 2022년 관세법령 개정사항2 교재순 >

- 이전 개정사항 참조

구민희 관세사

★ 개정된 법률 총정리 - 교재순 (기존 교재를 보면서 개정사항 정리)

★ **출제 가능성에 따른 중요도 표시**

개정중요도를 ★/★★/★★★ 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단, 개정의 중요도이지 내용의 중요도는 아님.

★ **개정의 성격을 표시함**

1. 개정내용이 신규법률이면 **신설**
2. 개정내용의 내용의 변화이거나 명칭의 변화이면 **변경**
3. 개정내용이 기존내용의 정리적 성격이면 **정리**
4. 개정내용이 없어지는 거면 **삭제**
5. 개정내용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로 우상향되었다면 **승격**

★ **개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 **교재 82페이지 ★ - 정리**

<변경 전>

4) 운임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변경 후>

4) 운임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 **교재 146페이지 ★ - 덤핑 재심사 사항 규정 - 신설 (법 개정과 연동)**

③ **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2)-1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기(2)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상기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준수 여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의 유효기간**

현행과 같음

● **교재 163페이지 ★ - 상계 재심사사항 규정 - 신설**

⑬ **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2)-1 **상계관세의 재심사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기(2)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상기에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 가격수정 등의 약속 준수 여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재 193페이지 ★★ - 용도세율 적용시기 (신설)**

<변경 전>

2. **용도세율 적용신청시기**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2. **용도세율 적용신청시기**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교재 238·241페이지 ★★ - 변경

<변경 전>

* 238페이지

(2) 가산세 -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 ② 납부지연가산세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족세액의 10%

② 납부지연 가산세 (가 + 나)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만분의 25)**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 (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241페이지

(2) 가산세율 (① + ②)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

(밀수출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② 납부지연가산세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 나)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만분의 25)**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만분의 22)

● **교재 283페이지 ★ -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신설) - 4월1일 시행**

V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환급청구권의 기산일 즉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어느 하나의 날로 한다.

- (1)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경정결정일
-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경우 그 납부일
- (3) 위약물품 수출로 인한 환급의 경우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
- (4) 법10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 (5)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로 한다.
- (5)-1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 (6)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 (7)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취하일 또는 각하일
- (8)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법률의 시행일

● **교재 303~304페이지 ★★★**

- **개인구매물품 관세환급대상 확대로 인한 제출서류(신설)**
- **법 개정 사항과 변동**

IV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1. 의의 및 요건(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2)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 (3) 법 제241조제2항(간이통관)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환급

여행자가 법 제96조제2항(여행자휴대품 등 감면)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 4월1일 시행
- (2)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3. 준용규정

- 현행과 같음.

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 등

(1)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요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 ①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 ②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2) 신청서 제출

상기1.(자가사용물품 관세환급) 상기2.(여행자휴대품 관세환급)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 ②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기1.(1)(2)의 경우

: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 상기1.(3)의 경우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다. 상기2.(2)의 경우

: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3) 환급액

상기1.(자가사용물품 관세환급) 상기2.(여행자휴대품 관세환급)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① 물품을 전부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 ②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 교재 346~347페이지 ★ - 정리·승격

<변경 전>

(5)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

용도세율의 적용을 승인받은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신고자의 성명·주소

<변경 후>

(5)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재해·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국내에 소재한 자기 소유의 다른 장소로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① 법 제83조·법 제89조제1항제2호·법 제90조·법 제91조·법 제93조·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 ② 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해당 물품의 관세 분할납부기간

(6) 변경신고서 기재사항

상기 (5)에 따른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 ② 해당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 ③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 ④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 ⑤ 설치 또는 사용 장소와 신고자의 성명·주소

● 교재 442페이지 ★ - 정리 (법 개정사항과 연동)

(3) 하역 신고(확인)

국제무역선(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역 신고시 신고서 기재사항(령 제161조 제2항)
물품을 하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물품의 품명·개수 및 중량
3. 승선자수 또는 탑승자수
4. 선박 또는 항공기 대리점
5.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 교재446페이지★★-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신설)
- (법 개정사항과 연동)

(3) 외국물품의 적재 등

상기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 령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선원의 수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

② 당해 물품이 상기 (3)외국물품의 적재 등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①의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2.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연월일

③ 세관장은 ①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교재487~489페이지★- 특허의 기준(정리)

<변경 전>

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보세구역의 운영 특허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 ② 운영인의 결격사유(법 175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③ **위험물품을** 장치, 제조, 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 수출입규모 및 **장치면적**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변경 후>

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보세구역의 운영 특허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 ② 운영인의 결격사유(법 175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이하 이 호에서 “위험물품”이라 한다)**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 교재500페이지★★- 보세공장의 작업허가신청(신설)

<변경 전>

(4)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① 의의

현행과 같음

<p>* 령 제203조(보세공장의 작업허가신청)</p> <p>① 보세공장의 작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삭제 <2004. 3. 29.>2. 보세작업의 종류·기간 및 장소3. 신청사유4. 당해 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p>②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p>
--

<변경 후>

<p>* 령 제203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신청 등)</p> <p>① 보세공장의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보세작업의 종류·기간 및 장소2. 신청사유3.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규격 및 수량4. 해당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p>② 상기①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p> <p>③ 상기①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1년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p>④ 상기③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상기③ 또는 ④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p>
--

● 교재501페이지★★- 원료과세 신청(변경)

<변경 전>

② 원료과세 신청단위

㉠ 의의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 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①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상기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변경 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상기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 교재 513페이지 ★★★ -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변경)
- 법 개정과 연동

(7)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2월 -> 3월)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교재 537페이지 ★ - 매각대행기관 (변경)

<변경 전>

3) 매각대행기관(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 ① 「금융회사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관리공사
- ②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 ③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변경 후>

3) 매각대행기관(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공사
- ②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 ③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 교재 629페이지 ★ (변경)

① 반입 후 수출신고대상물품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3.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특례

①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기타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재 642~646페이지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전면 수정

V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등

1. 의의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기준

- 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 ②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춘 것
- ③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춘 것
- ④ 그 밖에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절차

① 신청서 제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공인갱신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상기의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갱신신청 사전통지

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공인증서 교부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기타 세부절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공인심사

(1) 심사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2) 예비심사요청

상기 (1)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예비심사결과통보

관세청장은 상기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1)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타 법률 보안증서에 의한 심사생략

관세청장은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는 상기 1.(1)의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공인 유효기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1) 의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의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다른 국가 공인업체에 대한 상호조건에 의한 통관절차상의 혜택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상기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3) 통관절차상의 혜택정지 및 시정명령

1) 통관절차상의 혜택정지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상기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상기에서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3항에 따라 변동사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259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소속 직원에게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공하는 혜택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시정명령

관세청장은 상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1) 주기적 확인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상기 1.의의 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자율평가 및 결과보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상기(1)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 지정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보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5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로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3) 양도, 양수 등의 보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세부사항

상기 (1) ~ (3)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고 방법 및 절차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6.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9조 또는 제3호·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중소기업지원)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8.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평가

(1) 의의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평가할 수 있다.

< 준수도 측정·평가의 절차 >

관세청장은 상기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 및 이 영 제258조제1호에 따른 특별통관 대상 업체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2) 결과 활용

관세청장은 상기1.에 따른 측정·평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평가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 준수도 측정·평가의 활용 >

관세청장은 상기에 따라 준수도 측정·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2. 보세구역의 관리·감독
3. 법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감독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관리
5. 과태료·과징금의 산정
6.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한 위기, 파산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준수도 측정·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1) 의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 ③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 구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및 위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① 관세청 소속 공무원
- ②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임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회의진행

-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기타

상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교재 733페이지 ★★ - 포상금 범위 확대(변경)

<변경 전>

(4) 포상금 범위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변경 전>

(4) 포상금 범위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